

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
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권영식 의원 발의】



2021. 6. 22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350호로 2021년 6월 7일 권영식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사회·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 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4조)

다. 지급대상(안 제5조)

라.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및 중복지원 공제 등에 대한 사항
(안 제6조 ~ 제7조)

마.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.
- 다. 입법예고(2021. 6. 7. ~ 6.11. / 5일 간): 의견없음.

5. 검토의견

- 본 건은 사회·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 구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임.
- 주요 내용은
 - 조례명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」이고 9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음.
 -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
 -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음.
 -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
 - 안 제7조에서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긴급재난지원금의 중복 지원 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8조에서는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-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중대한 재난발생 시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 주도의 대책과 별개로 구 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. 다만,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급대상, 지급액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구민 의견수렴 및 구의회와의 협의 등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난”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

2 주민등록법

제6조(대상자) 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(이하 “거주지”라 한다)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(이하 “주민”이라 한다)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.

1. 거주자: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(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)

2. 거주불명자: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

3. 재외국민: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「해외이주법」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

가.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

나.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

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3. “결혼이민자”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.

4 출입국관리법

제10조(체류자격)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.

2. 영주자격: 대한민국에 영주(永住)할 수 있는 체류자격

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

제17조(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)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대책본부”라 한다)를 둔다.